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4 선고 2019가단1169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이종태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2.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9. 1. 18. 원고에게 2020. 6. 30.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의 아들인 D는 2019. 6. 12. E조합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78,284,840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인 F조합에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위 등기를 말소하였고, 10,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인 G에 대한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위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1,556,000원은 군포시에 대한 세금채무 변제에 지출하여 위 부동산 이미 설정되어 있던 압류등기를 말소하였고, 신탁비용으로 1,000,000원을, 신탁등기비용으로 1,253,200원을, 인지세로 75,000원을 각각 지출하였다.

C는 2019. 6. 12. E조합에 대하여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E조합을 우선수익자로, 위탁자인 C를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E조합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반환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으로써 C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설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인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수정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 ,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1층 429.09㎡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 437.44㎡ 공동주택(연립주택)

3층 427.14㎡ 공동주택(연립주택)

4층 421.14㎡ 공동주택(연립주택)

5층 393.11㎡ 공동주택(연립주택)

지층 603.811㎡ 주차장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119.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군포시 외 2필지

대지권 동기사항 없음 0

